



닭에게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하는 등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동물이 안전한 양계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5대 자유는 ①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③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④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⑤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1991년 동물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져, 2010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및 축산물 인증표시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운송차량, 도축장 지정제, 동물운송 규정의무화, 농가/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이후 도입의 용이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축종별로 순차적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 산란계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14년 육계도 인증이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여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 기준은 기존 케이지 사육을 대신해 평사, 방사 혹은 다단식 사육시설을 사용해서 산란계를 사육해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지 사용금지와 더불어 헛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헛대는 수당 15cm 이상 제공해야 하는데 전체 사육 수수에 맞춰 헛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 역할을 하는 유사시설도 화에 포함하며, 유사시설의 대표적인 예는 슬랫 구조물인데 슬랫 구조물의 경우 전체 필요한 화의 80%까지 인정해주고 있으며,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1/3 이상 깔짚으로 덮여있어야 하고, 모래목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복지인증에서는 가축의 정상적인 행동표출을 위한 사육시설 개선과 더불어 사육밀도 준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 기준에는 평사 사육 시 바닥면적 1㎡당 성계(18주 이상) 9수 이하 사육밀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성계 기준으로 성계 1마리는 육성계(3~8주령) 2마리,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다만 여러 층으로 구성된 다단식 사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산란계가 활용하는 여러 층의 면적을 사육 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동물복지인증에서는 부리다듬기와 강제 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리다듬기는 카니발리즘 등이 예상될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적외선 방법을 이용하여 부화 후 24시간 이내에 부리다듬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부리 끝에서 콧구멍 쪽으로 1/3이 넘지 않도록 부리다듬기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응급한 경우에도 부리다듬기를 할 수 있으나 수의사의 판단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인증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방목에 대한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동물복지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방목사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복지인증에서는 방목 사육은 선택사항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란계 수당 1.1㎡의 방목장을 제공할 경우에는 자유방목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축산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동물복지인증 평가 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